

문 1. 다음 (가)에 제시된 <작성 원칙>에 따라 (나)의 <A시 보도자료>를 수정하거나 보완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작성 원칙>

- 보도자료의 제목 및 부제는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 첫 단락인 '리드'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의 핵심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 제목과 부제에서 드러내고 있는 핵심 정보를 본문에서 빠짐없이 제시해야 한다.
- 불필요한 잉여 정보를 포함하거나 동일 정보를 필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 정보 전개에 필요한 표, 그래프, 그림 등을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나) <A시 보도자료>

㉠ **봄철 불청객 '황사'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

- 대응 체계 강화와 시민 행동 요령 안내 등 철저한 대비로 황사 피해 최소화 -

㉡ A시는 매년 봄철(3~5월)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황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A시는 황사 대응 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하고, 시민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매년 봄철이면 반갑지 않은 손님인 황사가 찾아온다. 황사는 우리 인체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A시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황사 관측일수는 6.1일이며, 이 중 5.1일(83%)이 봄철(3~5월)에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상청의 기상 전망에 따르면 A시의 황사 발생 일수는 4월에는 평년(1.9일)과 비슷하겠으나, 5월에는 평년(2.5일)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 최근 중국 북부지역의 가뭄으로 평년보다 더 강한 황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A시에서는 황사 발생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기후 상황 전파, 도로변과 대규모 공사장 물 뿌리기, 진공청소차를 활용한 청소 등 체계적인 대응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황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 ① ㉠을 '불청객 황사, 봄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입니다'로 수정한다.
- ② ㉡은 아래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③ ㉢에 최근 30년간 한국의 황사 발생 관측일수를 도표로 제공한다.
- ④ ㉣에 이어 중국 북부지역 가뭄 원인과 중국 정부의 대처 방안을 추가한다.
- ⑤ ㉤에 시민들이 황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행동 요령과 그 안내 계획을 추가한다.

문 2.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2019년 7월 17일 학술연구자정보망에서 학술연구자 A의 기본 정보는 조회할 수 있는데, A의 연구 업적 정보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을: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자정보망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였으나,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추가로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민원인은 학술연구자의 연구 업적 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요. 또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학술연구자의 업적 정보의 집적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는 연구 업적 정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갑: 학술연구자가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추가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조회 화면에 무슨 문구가 표시되나요?

을: 조회 화면에 "해당 연구자가 상기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해당 연구자의 업적 정보의 집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 화면에 "업적 정보 집적 중"이라는 문구가 표시되고요. 해당 민원인께서는 무슨 문구가 표시되었다고 말씀하시나요?

갑: 문구 표시에 대한 말씀은 듣지 못했어요. 아마 문구를 읽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학술연구자의 업적 정보 제공 동의율과 업적 정보 집적률은 현재 얼마만큼 되나요?

을: 2019년 7월 18일 오늘 기준으로 학술연구자의 연구 업적 정보 제공 동의율은 약 92%입니다. 동의자 대상 업적 정보 집적률은 약 88%고요. 동의한 학술연구자가 10여만 명에 이르러 자료를 집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지만 2019년 8월 말까지는 정보 집적이 끝날 겁니다.

갑: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민원인에게 []라고 답변 드리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 ① 지금은 조회할 수 없지만 2019년 8월 말이 되면 학술연구자 A의 연구 업적 정보가 조회될 것이다
- ② 학술연구자 A가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그의 업적 정보가 현재 집적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
- ③ 현재 학술연구자 A는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동의한 상태지만 그의 업적 정보가 현재 집적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
- ④ 지금은 조회할 수 없지만 만일 학술연구자 A가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동의했다면 한 달 안에는 그의 연구 업적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⑤ 오늘 다시 학술연구자 A의 연구 업적 정보를 조회한다면 "해당 연구자가 상기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니다"라는 문구가 나올 것이다

문 3. 다음 글의 ㉠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무직인 갑은 만 3세인 손녀의 돌봄을 위해 ○○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의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갑이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95조(회원) ① 본 센터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②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와 ○○시 소재 직장 재직자이다.

③ 회원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별도로 정한다.

그러자 갑은 ○○시가 제정한 다음의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근거하여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회원) ① 회원은 본 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본 센터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 회원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시 소재 직장 재직자
2. 만 5세 이하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갑의 민원을 검토한 ○○시는 운영규정과 조례가 불일치함을 발견하고 ㉠갑과 같은 조건의 사람들도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또는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 ① 운영규정 제95조 제1항의 ‘회원으로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를 ‘본 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로 개정한다.
- ② 운영규정 제95조 제2항의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을 ‘만 5세 이하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로 개정한다.
- ③ 조례 제5조 제1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 개정한다.
- ④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개정한다.
- ⑤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를 ‘만 5세 이하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정보호자’로 개정한다.

문 4. 다음 글의 ㉠ ~ ㉥에서 전체 흐름과 맞지 않는 한 곳을 찾아 수정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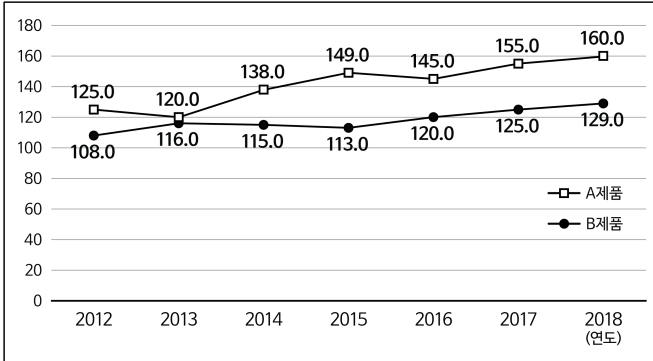
‘거짓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물음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은 거짓말을 하려는 그 사람의 의도일까요? 아니면 그 말이 사실과 일치하는가의 여부일까요? ㉠ 자신이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두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참이라고 믿는 것을 믿는 대로 말했는데 그 말이 사실은 거짓인 경우, 이를 두고 거짓말을 한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들곤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참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내가 참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과 달라 거짓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는 ㉡ 거짓말을 만드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라기보다는 사실과의 일치 여부가 되겠지요. 이런 의미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을 참이라고 믿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셈이니까요. 이런 거짓말을 ‘결과적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믿는 것과는 반대로 말하는 것을 ‘의도적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결과적 거짓말로 정의할 것인가, 의도적 거짓말로 정의할 것인가는 맥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념에 더 잘 맞는 것은 의도적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거짓인 말’과 ‘거짓말’은 서로 구별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연히 참이 된 말’과 ‘참말’도 구별되어야겠지요. 가령, 모든 것을 자신이 믿는 바와는 정반대로 말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만일 이 사람이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가 아니다.’라고 믿는다면,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그는 사실과의 일치 여부로 보면 참말을 한 셈이지만,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을 자신의 믿음대로 말한 사람과는 다른 의미에서 참말을 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 그는 우연히 진실을 말했다를 뿐입니다. 이런 사람과, 자신이 믿는 바대로 말하려고 했고 그 결과 진실을 말한 사람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① ㉠을 ‘자신이 참이라고 믿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두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로 수정한다.
- ② ㉡을 ‘거짓말을 만드는 것은 사실과의 일치 여부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되겠지요’로 수정한다.
- ③ ㉢을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참이라고 믿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셈이니까요’로 수정한다.
- ④ ㉣을 ‘이 두 가지 거짓말이 모두 참말과 구분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로 수정한다.
- ⑤ ㉤을 ‘그는 의도적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로 수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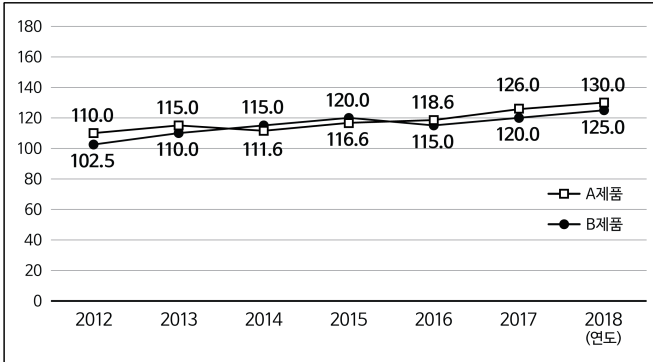
문 3. 다음 <그림>은 2012 ~ 2018년 동안 A제품과 B제품의 판매수량 및 평균 판매단가를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이다. <그림>으로부터 알 수 없는 것은?

<그림 1> A제품과 B제품의 판매수량 지수



※ 판매수량 지수는 2011년의 판매수량을 100으로 하였을 때 해당연도 판매수량의 상대적 비율임.

<그림 2> A제품과 B제품의 평균 판매단가 지수



※ 1) 평균 판매단가 지수는 2011년의 평균 판매단가를 100으로 하였을 때 해당연도 평균 판매단가의 상대적 비율임.

- 2) 2011년 A제품의 평균 판매단가는 B제품과 동일함.
- 3) 매출액 = 평균 판매단가 × 판매수량

- ① A제품 매출액의 연평균 증가율
- ② 2012년 A제품 매출액 대비 B제품 매출액 비율
- ③ B제품 평균 판매단가의 연평균 증가율
- ④ 2018년 B제품 평균 판매단가 대비 A제품 평균 판매단가 비율
- ⑤ B제품 판매수량의 연평균 증가율

문 4. 다음 <표>는 국민 삶의 질을 평가하는 다양한 개별지표와 종합지수이다. <표>의 종합 지수를 아래의 <대화>에 근거하여 재작성할 경우, '환산된 2014년 주관적 웰빙 영역 지수'(A)와 '2015년 기존의 종합 지수 대비 재작성된 종합 지수의 변화'(B)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영역별 지수 및 종합 지수

영역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소득·소비	100.0	99.4	103.9	109.0	109.6	108.7	111.9	113.4	114.4	116.5
고용·임금	100.0	102.1	103.0	100.3	99.8	101.8	103.6	105.2	103.6	103.2
사회복지	100.0	101.3	103.2	108.4	107.8	107.8	110.0	112.8	115.4	116.3
주거	100.0	100.3	100.5	101.3	102.0	101.9	102.1	103.6	105.2	105.2
건강	100.0	112.7	114.2	110.6	107.1	108.5	105.6	105.7	108.9	107.2
교육	100.0	104.5	107.7	114.3	116.7	119.7	124.4	119.7	122.5	123.9
문화·여가	100.0	99.9	98.9	98.9	99.5	95.4	104.4	111.0	111.4	112.7
가족·공동체	100.0	98.3	98.2	94.9	95.6	96.6	98.5	98.5	98.2	98.6
시민참여	100.0	103.1	111.5	116.1	114.8	114.1	116.9	116.3	113.4	111.1
안전	100.0	96.9	97.5	101.3	108.9	113.2	114.5	116.3	121.4	122.2
환경	100.0	102.7	109.5	103.9	103.8	105.3	109.4	107.1	108.5	111.9
종합	100.0	101.9	104.4	105.4	106.0	106.6	109.2	110.0	111.2	111.7

<대 화>

사무관: 2013년부터 '주관적 웰빙' 영역의 개별지표값이 처음으로 측정되어 이 영역이 추가됩니다. '주관적 웰빙' 영역의 개별지표값은 정리되었나요?

주무관: 네. '주관적 웰빙' 영역의 개별지표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역	개별지표	연도		
		2013	2014	2015
주관적 웰빙	삶에 대한 만족도	5.0	5.0	5.7
	긍정정서	6.0	5.7	6.6

사무관: '주관적 웰빙' 영역까지 포함한 종합 지수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역 지수는 기준년도(2006년) 대비 당해 연도 영역별 '개별지표 비율'의 산술평균임. (단, '주관적 웰빙' 영역의 기준년도는 2013년임)
- 개별지표 비율 = $\frac{\text{당해연도 지표값}}{\text{기준년도 지표값}} \times 100$
- 종합 지수는 모든 영역 지수의 산술평균임.

주무관: 영역 지수에 '주관적 웰빙' 영역을 추가하고, 종합 지수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사무관: 아! 그런데, 2013년 '주관적 웰빙' 영역 지수는 2013년 기존 종합 지수 값인 110.0을 사용하고, 이 값을 기준으로 2014년과 2015년의 '주관적 웰빙' 영역 지수를 환산해주세요.

※ 지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 |
|---------|----|
| A | B |
| ① 97.5 | 감소 |
| ② 97.5 | 증가 |
| ③ 107.3 | 감소 |
| ④ 107.3 | 증가 |
| ⑤ 107.3 | 없음 |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 ~ (E)의 요건과 <상황>의 ㉠ ~ ㉡를 옳게 짝지는 것은?

민법 제0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A) ~ (E)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A)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고의란 가해자가 불법행위의 결과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심리상태이며, 과실이란 가해자에게 무엇인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주의로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B) 피해자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해자의 행위(가해 행위)가 있어야 한다.
- (C) 가해행위가 위법한 행위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 (D)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 (E)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가해행위가 없었다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상 황> —

甲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 교통신호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乙을 치어 乙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 경우, ㉠ 甲이 차량으로 보행자 乙을 친 것, ㉡ 甲의 차량이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 ㉢ 甲이 교통신호를 준수할 의무를 부주의로 이행하지 않은 것, ㉣ 횡단보도를 건너던 乙이 부상을 입은 것, ㉤ 甲의 차량이 보행자 乙을 치지 않았다면 乙이 부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 (A) ~ (E) 요건을 각각 충족하기 때문에 甲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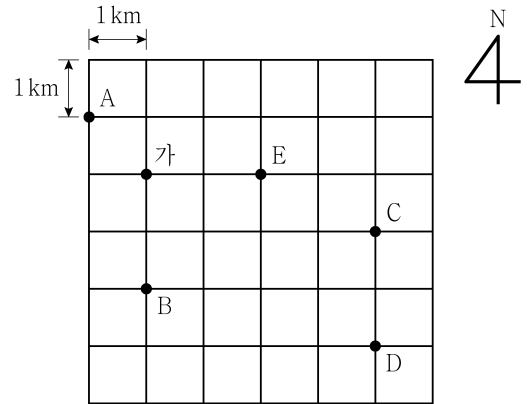
- ① (A) - ㉡
- ② (B) - ㉠
- ③ (C) - ㉡
- ④ (D) - ㉢
- ⑤ (E) - ㉣

문 2. 다음 글과 <○○시 지도>를 근거로 판단할 때, ㉠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시는 지진이 발생하면 발생지점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시민들에게 지진발생문자를 즉시 발송하고 있다. X등급 지진의 경우에는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1km, Y등급 지진의 경우에는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시민들에게 지진발생문자를 발송한다. 단, 수신차단을 해둔 시민에게는 지진발생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8월 26일 14시 정각 ‘가’지점에서 Y등급 지진이 일어났을 때 A ~ E 중 2명만 지진발생문자를 받았다. 5분 후 ‘나’지점에서 X등급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C와 D만 지진발생문자를 받았다. 다시 5분 후 ‘나’지점에서 정서쪽으로 2km 떨어진 지점에서 Y등급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만 지진발생문자를 받았다. A ~ E 중에서 지진발생문자 수신차단을 해둔 시민은 1명뿐이다.

<○○시 지도>



— <보 기> —

- | | | |
|---------|---------|---------|
| ㄱ. A | ㄴ. B | ㄷ. E |
| ㄹ. A와 E | ㅁ. B와 E | ㅂ. C와 E |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ㄹ, ㅂ
- ④ ㄴ, ㄷ, ㅁ
- ⑤ ㄴ, ㅁ, ㅂ

문 3.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과거에 급제한 아들이 분재 받은 발의 총 마지기 수는?

조선시대의 분재(分財)는 시기가 재주(財主) 생전인지 사후인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별급(別給)은 재주 생전에 과거급제, 생일, 혼인, 출산, 감사표시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지는 분재였으며, 깃급[衿給]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재주가 임종이 가까울 무렵에 하는 일반적인 분재였다.

재주가 재산을 분배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 재주 사후에 그 자녀들이 모여 재산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를 화회(和會)라고 했다. 화회는 재주의 3년 상(喪)을 마친 후에 이루어졌다. 자녀들이 재산을 나눌 때 재주의 유서나 유언이 남아 있으면 이에 근거하여 분재가 되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어 가졌다. 조선 전기에는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랐는데, 친자녀 간 균분 분재를 원칙으로 하나 제사를 모실 자녀에게는 다른 친자녀 한 사람 몫의 5분의 1이 더 분재되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양자녀에게는 차별을 두도록 되어 있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경국대전』의 규정이 그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장남에게 많은 재산이 우선적으로 분재되었다. 깃급과 화회 대상 재산에는 별급으로 받은 재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 ※ 분재: 재산을 나누어 줌
- ※ 재주: 분재되는 재산의 주인

—<상 황>—

- 유서와 유언 없이 사망한 재주 甲의 분재 대상자는 아들 2명과 딸 2명이며, 이 중 딸 1명은 양녀이고 나머지 3명은 친자녀이다.
- 甲이 별급한 재산은 과거에 급제한 아들 1명에게 발 20마지기를 준 것과 두 딸이 시집갈 때 각각 발 10마지기씩을 준 것이 전부였다.
- 화회 대상 재산은 발 100마지기이며 화회는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 과거에 급제한 아들이 제사를 모시기로 하였으며, 양녀는 제사를 모시지 않는 친자녀 한 사람이 화회로 받은 몫의 5분의 4를 받았다.

- ① 30
- ② 35
- ③ 40
- ④ 45
- ⑤ 50

문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여행을 좋아하는 甲은 ○○항공의 마일리지를 최대한 많이 적립하기 위해,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항공의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A, B 두 신용카드 중 하나의 카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각 신용카드의 ○○항공 마일리지 제공 기준은 다음과 같다.

<A신용카드의 ○○항공 마일리지 제공 기준>

- 1) 이용금액이 월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일 경우
 - 이용금액 1,000원 당 1마일리지를 제공함.
- 2) 이용금액이 월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일 경우
 - 100만 원 이하 이용금액은 1,000원 당 1마일리지를, 100만 원 초과 이용금액은 1,000원 당 2마일리지를 제공함.
- 3) 이용금액이 월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 100만 원 이하 이용금액은 1,000원 당 1마일리지를,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이용금액은 1,000원 당 2마일리지를, 200만 원 초과 이용금액은 1,000원 당 3마일리지를 제공함.

<B신용카드의 ○○항공 마일리지 제공 기준>

- 1) 이용금액이 월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일 경우
 - 이용금액 1,000원 당 1마일리지를 제공함.
- 2) 이용금액이 월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일 경우
 - 100만 원 이하 이용금액은 1,000원 당 2마일리지를, 100만 원 초과 이용금액은 1,000원 당 1마일리지를 제공함.
- 3) 이용금액이 월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 70만 원 이하 이용금액은 1,000원 당 3마일리지를, 70만 원 초과 이용금액은 1,000원 당 1마일리지를 제공함.

※ 마일리지 제공 시 이용금액 1,000원 미만은 버림

—<보 기>—

- ㄱ.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월 120만 원이라면, A신용카드가 B신용카드보다 마일리지를 더 많이 제공한다.
- 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월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A신용카드가 제공하는 마일리지와 B신용카드가 제공하는 마일리지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ㄷ.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월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B신용카드가 A신용카드보다 마일리지를 더 많이 제공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정답표

영역	언어논리영역
----	--------

문번	정답
1	5
2	2
3	2
4	3

영역	자료해석영역
----	--------

문번	정답
1	4
2	5
3	2
4	4

영역	상황판단영역
----	--------

문번	정답
1	2
2	4
3	5
4	2